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7.

발 의 자 : 서범수 · 이현승 · 박충권
한지아 · 김장겸 · 조은희
최수진 · 고동진 · 김소희
추경호 · 김기웅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(이하 “대기업”이라 함)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,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 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

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 16조 및 제18조).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“일간신문”을 “일간신문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법인이”를 “법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“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”을 “소유제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인이”를 “법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기업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유예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